

일 자	2014. 2.21(금) ~ 22(토)
장 소	의성 탑산약수온천 대연회실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 서 대변 하겠습니다 !

| 2 | 0 | 1 | 4 |

상반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워크숍 자료

2014. 2. 21.(금) ~ 22.(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www.gbe.or.kr

꿈꾸지 않으면...

- 양희창

꿈 꾸지 않으면 사는게 아니라고
별해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리 알고 있네 우리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강령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이자 공무원노동자로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통하여 「국민에게 참봉사」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실행 강령을 제정·선포한다.

1. 우리는 국내의 민간노동단체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과 순수한 공무원 노동자만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견지한다.
2.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기회복하여 인간적인 삶을 실현한다.
3.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인식하고 노동활동에 있어 공무원의 본분과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4. 우리는 상생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사문화를 선도한다.
5. 우리는 공직사회의 올바른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여 공무원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가이익 수호에 기여한다.
6. 우리는 관료주의 병폐를 과감히 타파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주 행정을 실현한다.
7. 우리는 공직사회내부의 각종 차별을 철폐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 사회를 실현한다.
8. 우리는 국내·외의 공무원독자노조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공무원노동조직의 통일을 기원한다.
9.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와 통일조국 건설에 기여한다.
10. 우리는 인간존중의 보편성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일정표

시 간	내 용	비 고
-----	-----	-----

2. 21.(금) : 1일차

18:00~18:20	20'	등록 및 접수		사무처
18:20~18:30	55'	개회		사무총장
18:30~19:20	50'	강의	공무원연금법 이해	
19:20~19:30	10'	휴식		
19:30~20:20	50'	강의	석문호흡 “건강한 숨 건강한 삶” 석문호흡 안동선역장 일평 이상원	
20:20~20:30	10'	휴식		
20:30~21:00	30'	강의	지방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지원국 총무과 인사담당	
21:00~21:10	10'	숙소 배정 및 짐 정리		사무처
21:10~22:10	60'	저녁식사 및 화합의장		사무처
22:10~		자유시간 및 취침		

2. 22.(토) : 2일차

07:00~08:00	20'	기상		사무처
08:00~09:00	60'	아침 식사		사무처
09:00~10:00	60'	워크숍 평가		위원장
10:00 ~		폐회 및 기념 촬영		사무총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책자 순서

I . 워크숍	7
1. 공무원 연금의 이해	9
2. 석문호흡(건강한 숨 건강한 삶)	37
3. 지방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	47
II. 단체교섭 진행 사항	55
III. 2014년 전반기 주요 사업 추진 일정	65
※ 참석자 명단 및 숙소배정	70 / 71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 서 대변 하겠습니다 !

I. 워크숍

1. 공무원 연금의 이해

2. 석문호흡(건강한 숨 건강한 삶)

3. 지방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 서 대변 하겠습니다 !

1. 공무원 연금의 이해

위원장 김 종 기



The table of contents slide has a blue gradient background with a wavy pattern at the top. The title '목 차' (Table of Contents) is centered in white text. Below it is a list of four items, each in a blue rounded rectangle:

- I 공무원연금 개요 및 현황
- II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해설
- III 공무원연금 향후 전망 및 대책
- IV 2009년 연금법 개정안 해설

In the top right corner, there is a small logo for '경북교육노조' (Gyeongsangbuk-do Education Labor Union) and the number '2' at the bottom right corner.

I

공무원연금 개요 및 현황

공무원연금 도입배경

- ▣ 1949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연금제도의 근거 신설
- ▣ 한국전쟁으로 인한 재정 궁핍 상황 속에서 제도 창설 지연
- ▣ 1960년 최초의 공적연금으로서 공무원 연금제도 도입

개념

공무원 퇴직 또는 사망 시 국가 및 개인이 납부한 부담금 및 기여금을 기초로 산정된 급여를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기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성격

- 1 사회보험 원리에 기반한 사회보장
- 2 적극적 인사행정 원리 구현
- 3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운영
- 4 사용주로서 국가의 부양책임
- 5 공정한 직무수행 유도

공무원연금 개요

개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급여, 재해보상, 후생복지 관련 제도

범위

연금급여

퇴직 후 공무원,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

재해보상

공무원의 재직 중 사고, 사망에 대한 보상 및 위로금

후생복지

공무원 근무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5

공무원연금의 성격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한 인사정책

유능한 인력의 공직 유지
[장기간 성실 근무 유도]

재직자 복지 및 재해보상
등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

퇴직금 및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급여 성격

직업공무원
제도정책

고용주로서
국가의 부양
책임 [고용주로서 비용
부담 주체]

고용주로서 국가의 부양 책임 [고용주로서 비용 부담 주체]
퇴직자의 노후보장 및 사회정착 지원 의무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

6

공무원연금 적용대상



▣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사, 사법연수원생 등

▣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일부 직원

-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 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위원으로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는 자

기타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제외대상 : 군인, 선거직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7

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



구 분	종 류	사 유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등	퇴직 · (일반)사망 시
유족급여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등	
퇴직수당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 사망 시
재해보상 급 여	공무상요양비, 장애연금,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공무상 부상 · 질병 · 장애 · 사망시
부조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재해발생시 등

8

II

공무원연금 개정안 해설

공무원연금법 개정 연혁

1. 연금제도 합리화를 위한 1차 개정(1996.1.1)

- 기여금 및 부담금 상향조정 : 5.5% ⇒ 6.5%(96) ⇒ 7.5%(99)
- 1996.1 이후 신규임용자에 대한 연금지급개시 연령 신설 : 60세
- 수급자가 유족연금 수급 시 유족연금의 ½ 감액

2.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한 2차 개정(2001.1.1)

- 기여금 및 부담금 상향조정 : 7.5% ⇒ 8.5%
- 연금기준 액 변경 : 퇴직당시 보수 ⇒ 퇴직 전 3년간 평균보수
- 1996년 이전 재직자까지 연금지급개시 연령 적용 확대

3. 연금제도 선진화를 위한 3차 개정(2010.1.1)

- 급여산정 기준보수 변경 : 보수월액 ⇒ 기준소득월액
- 2010.1 이후 신규임용자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 60 ⇒ 65세
-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 70 ⇒ 60%

공무원연금 개정경과

- 2006. 5월 ~ 10월 : KDI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 2006. 7월 ~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이하 연금발전위) 구성·운영
- 2007. 1. 10 : 연금발전위 1차 정책견의안 발표
- 2007. 7월 ~ :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견의안 재검토
- 2008. 6월 ~ : 연금발전위 확대개편(민공노, 전공노,
공노총, 전교조, 교총 5개 단체 참여)
- 2008. 4월 ~ : 공무원·교원노조 공동 대응 및 실천 전개

- ◆ 5.3 총궐기 등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개악을 저지하고 논의기구 참여 쟁취
- ◆ 공무원연금 공동대책회의 결성 및 20차 대책회의 개최
- ◆ 올바른 공무원연금 개혁 공동투쟁본부 결성 (2008.9.3)
29차 회의 개최 및 행안부, 국회, 대언론 대응사업 등 전개
- ◆ 11.22 공무원·교원 노동자 총궐기 대회 개최 (5만 조합원 참여)
- ◆ 공동기자회견, 대국회 사업 및 지역별 의원면담 사업 등 지속 전개

11

공무원연금 개정경과

- 2008. 6월 ~ : 연금발전위 5회 전체회의, 14회 소위원회
개최
- 2008. 9. 23 : 연금발전위 사회적합의안 타결 및 발표
(2008.9.24)
- 2008. 10. 6 : 행안부,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입법예고
(사회적합의안 원안 수용)
- 2008. 10. 14 : 행안부 주최 공청회 개최
- 2008. 11. 7 : 정부안 국회 제출
- 2008. 11. 25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상정 및 소위원회부
- 2008. 12. 11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 개최
*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 2009. 12. 30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결
- 2009. 12. 30 : 국회 본회의 통과

12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경북교육노조



2008.4.26 연금개악·강제퇴출 저지 총궐기 대회



2008.11.22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대회



2009.7.13 공무원연금 개혁 촉구



2009.7.13 공무원연금 개혁 촉구 중단하라!

13

1. 연금산정기준 변경

경북교육노조

종전

보수월액
(기본급+정근수당)
※ 과세소득의 65%
수준



개정

기준소득월액
(총 소득)
※ 과세소득 수준

- 각종 급여 및 기여금의 산정기준을 '기준소득월액' (월평균과세소득 수준)으로 변경
- 개인별 편차가 큰 6개 보수는 직종·직급별 평균액을 반영
※ 6개보수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가보상비

14

2. 연금지급액(지급률) 인하

종전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 ×
(재직기간 ×
2% + 10%)

개정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 × 재직기간
× 1.9%

- 재직기간 1년당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9%를 곱하여 연금액 산정
- 연금산정에 있어 소득의 평균기간을 종전 '퇴직전 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
 ➔ '전 재직기간 평균'은 개정 이후 재직기간(2010년 1월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며, 개정 이전(2009년 12월 이전) 재직기간의 소득까지 평균하는 것은 아님
* 퇴직연금 이외에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수당 및 재해보상·부조급여 등은 종전 급여수준이 유지되며, 다만 급여산정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비율만 조정

15

3. 기여금 및 부담금 인상

종전

보수월액의 8.5%
(기준소득월액 기준
5.525%)

개정

기준소득월액의 7.0%
6.3%('10년) → 6.7%('11년)
→ 7%('12년)

- 연금재정의 안정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기여금 및 정부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

< 기여금 인상 예시(2) : 8급 10호봉 기준 >

보수월액	과세소득액	부담예상 기여금				
		5.525% (현재)	6.0% (09년)	6.34% (10년)	6.67% (11년)	7.0% (12년)
1,618,050원	2,489,300원	137,530원	149,360원	157,820원	166,040원	174,250원
예상 기여금 부담	증가액 (08년 대비)		+11,830원	+20,290원	+28,510원	+36,720원
	증가율		8.6%	14.8%	20.7%	26.7%

주) 보수인상 및 호봉승급은 반영하지 않고 단순비교 함

16

4. 연금산정시 소득상한제 설정



종전

(신설)

개정

전체공무원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1.8배를
소득 상한으로 설정

- 매년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할 경우 평균액의 1.8배를 기준으로 연금 및 기여금 산정
- 적정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 취지에 맞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설정하여 연금액 산정

17

5.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



종전

60세부터 지급 원칙
기준 재직자는 종전
규정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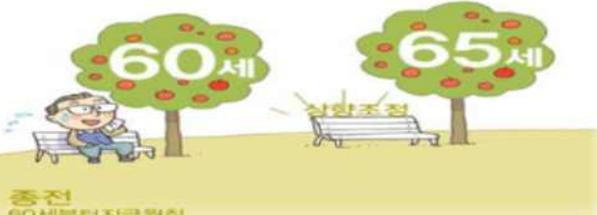
개정

65세부터 지급
(신규임용자부터 적용)

- 법시행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65세로 상향 조정

* 법 시행일 이후 임용 자중 개정이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기준 재직자로 간주하여 60세부터 지급원칙

신규임용자부터 65세 적용



18

6.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변경



종전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시 포함) 사망시

개정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 공무원의 조부모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에 포함

※ 법 시행일 이후 급여사유(사망일 기준) 발생 자부터 적용

부양하지 않아도 지급대상...



19

7.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종전

퇴직연금액의 70%

개정

퇴직연금액의 60%
(신규임용자부터
적용)

- 기존재직자는 종전규정 적용
- 법 시행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퇴직연금액의 60%로 유족연금 조정

※ 법 시행일 이후 임용자중 개정이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기존
재직자로 간주하여 퇴직연금액의 70% 적용

20

8. 연금 일부정지[소득심사제] 강화



종전

연금외 초과소득의
10~50% 감액

개정

연금외 초과소득의
30~70% 감액

- 연금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 감액
- 단, 연금액의 1/2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음

21

9.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 구체화



종전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경우 급여 제한

개정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직무와 무관한
과실사고로 감액

이전



직무와 무관한 과실 등
감액 제외

22

10. 재직기간 합산신청기간 폐지



종전

재임용후 2년 이내로
합산신청기간 제한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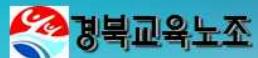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한 폐지

- 공무원 재직 중 언제든지 합산신청 가능

※ 신규임용자 뿐만 아니라 법 개정 이전 임용된 기존 재직자도 적용

23

11. 연금액 조정방법 변경



종전

소비자물가변동률(CPI) +
정책조정
(보수 · 물가간 $\pm 2\%$ p
내 조정)

개정

2015년부터 CPI 적용
'10~14년 : 보수 · 물가간
 $\pm 3\%$ 내 조정

- 연금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해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연금액 조정

※ 2014년 까지는 $\pm 3\%$ 내 정책 조정 병행

24

12. 휴직 중 기여금 납부방법 개선



종전

(신설)

개정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도
기여금 납부 가능

- 법 시행당시(2010. 1. 1.) 휴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



25

13. 공무상요양비[특수요양비] 지급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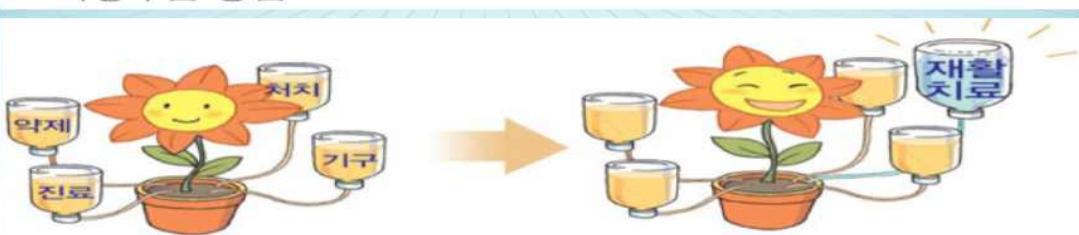
종전

약제 · 진료 ·
처치 · 기구

개정

약제 · 진료 · 처치 ·
기구 · 재활치료

-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에 재활치료비를 포함하여 공상공무원의 비용부담 경감



26

14. 퇴직연금/일시금 변경 가능



종전

퇴직연금 ↔ 조기퇴직
연금에 한해 퇴직급여
변경 가능

개정

퇴직연금 ↔ 일시금
(공제일시금 포함)
으로의 변경도 가능

- 퇴직급여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변경 가능
※ 법 시행일 이후 퇴직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



27

16. 다자녀 공무원의 대여학자금 상환시기 연장



종전

(신설)

개정

3자녀 이상의 대여
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 상환
시기 연장

- 3자녀의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 1자녀의 상환시기 연장

아이구~ 학자금 상환...



28

15. 공무원노조 전임 휴직기간에 대해 퇴직수당 재직기간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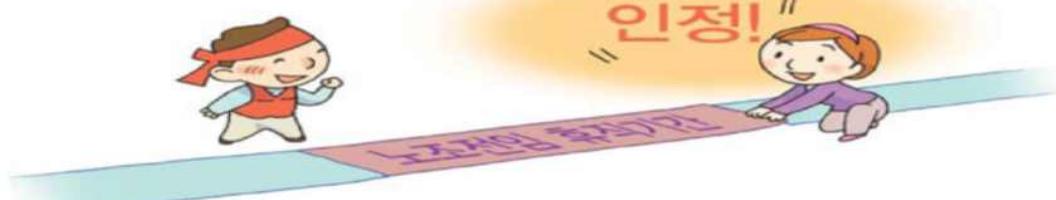
종전

퇴직수당 재직기간
산정시 휴직기간의
1/2 감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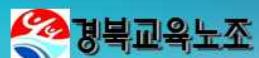
공무원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기간은
감축 제외

-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 중 2009.12.31. 이전 노조전임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감축 제외



29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구 분

공무원연금(10.1.1)

국민연금(07.7.3 개정)

제
도
일
반

도입시기

1960년 1월 1일

1988년 1월 1일

제도성격

노령연금+퇴직금+인사정책

기본적 노후소득 보장제도

부
담

부 담 률
(보험료)

공무원 : 7%, 국가 : 7%

개인 : 4.5%, 사용자 : 4.5%

부 담 금
산정기준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

30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구 분	공무원연금('10.1.1)	국민연금('07.7.3 개정)
급 여	급여종류	퇴직연금 등 19종
	퇴직연금 산정기준	재직기간평균 (법 개정 이후 기간)
	지 급 률	2.1% → 1.9%
	연금지급 개시연령	60세(법 개정 이후 신규 임용자는 65세)
	급여제한	있음(형벌 등, 최대 ½ 삭감)
	수급요건	20년 이상 재직

31



III

공무원연금 향후 전망 및 대책

공무원연금 부정적 시각



한국경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10년후 15조 '세금 하마'

기득권에 발목잡힌 한국 복지제도

내는 것보다 최대 3배 받아
빈곤층에 쓸 복지예산 잠식

hankooki.com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3.3.23 기사]

[단독]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 박근혜정부 5년간 30조 부어야

복지공약 재원의 22% 국민연금과 급여격차
개혁 이후 뒤레 2배로↑

H 해럴드 경제

공무원은 은퇴때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1.7배 더 받아

2013-03-27 11:13

'더내고 더받는 구조'로 소득대체율 70%나
이미 적립금 고갈상태…혈세 보전액 눈덩이

chosun.com 인쇄하기

공무원연금 적자 매우려면…朴 정부 5년간 30조원 필요

입력 : 2013.03.23 10:39 | 수정 : 2013.03.23 13:18

공무원 뱀 연금개혁, 특경비 유용...'공직자 특혜' 어디까지?

(서울=뉴스1) 엄지은 기자 입력: 2013.01.24 15:47:47

33

한국납세자연맹 서명운동



주변에 적극알려주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모음

서명인원: 13,144명
서명댓글보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제시하라'

꼭 서명참여바라며, 주변에도 퍼뜨려주세요.

공무원연금 2013년 적자 3조! 2030년 30조!

공무원연금부채 342조! (국민연금가입자 1인당 1706만원)

이 빚을 누가 갚아야 할까요?

공무원이 최상의 기득권이 되어버린지 오래...

납세자가 눈 부릅뜨지 않으면 나랏돈은 새롭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제시하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도 납세자의 힘을 보여 줍니다.

이 내용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알려주세요.

트위터 링크:[트위터 링크](#) 페이스북 링크:[페이스북 링크](#)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 개념 : 국가가 지급해야 할
총 연금액의 현재 가치

■ 수급자(1)의 향후 연금과 재직자(2)의
현재까지 근무로 발생한 연금

(1) 수급자(34만여명, 153조) : 퇴직,
유족연금 / 평가시점~유족사망시

(2) 재직자(106만여명, 199조) : 퇴직,
유족연금 / 퇴직 이후~유족사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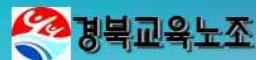
■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계산방식에
문제점이 있음.

- 산정을 미래보수 개념으로 계산
- 신뢰성에 담보할 수 없어 아직은
적용하지 않음

■ 충당부채가 342조라고 언론보도
됨에 서명운동 전개

34

공무원연금 수급 통계(13. 10월 기준)



퇴직연금 수급자 현황(유족, 장해 연금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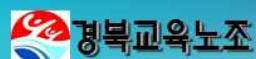
(단위: 명)

금액구간	계	비율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경찰 소방	교육직	법관 검사	기능직	공안직	군무원	기타
100만원 미만	19,136	5.99%	54	238	6,058	537	1,445	208	9,788	24	399	385
100~200만원	107,555	33.66%	148	6,864	31,971	12,644	7,695	371	39,190	49	2,451	6,172
200~300만원	125,277	39.21%	231	3,766	40,042	16,661	41,398	307	10,310	2	3,653	8,907
300~400만원	65,689	20.56%	402	685	9,973	1,306	48,610	192	6	0	1,967	2,548
400~500만원	1,832	0.57%	304	44	163	10	946	87	0	61	4	213
500~600만원	11	0.01%		7	0	0	0	1	0	0	0	3
600만원이상	10			3	0	0	0	0	6	0	0	1
계	319,489	100%	1,139	11,597	88,207	31,158	100,094	1,165	59,294	136	8,474	18,225

- **기타: 계약직, 연구직, 기타직, 고용직, 지도직 등(총 수급자: 360,851명)**
- **유족연금 및 장해연금 수급자 현황: 4만 1,362명(13. 10월 기준)**
- **연금 지급 평균액: 219만원(13. 1~10월까지 총액: 7조 5,366억)**

35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 원인



1 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



공적연금 부양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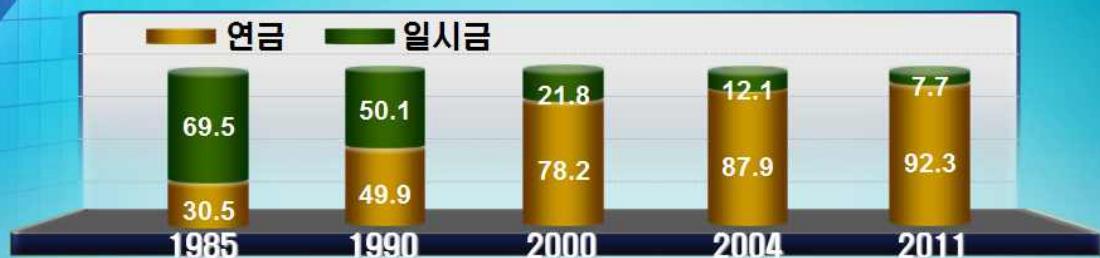
(12년말 기준)

구 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106만 4,472명	18만 2천명	27만 6,441명	2,061만 1,835명
연금수급자	34만 5,144명	8만 4천명	4만 8,289명	340만 6,644명
부양률	32.4%	46.2%	17.5%	16.5%

36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 원인

2 연금 선택 비율 상승



공무원연금 보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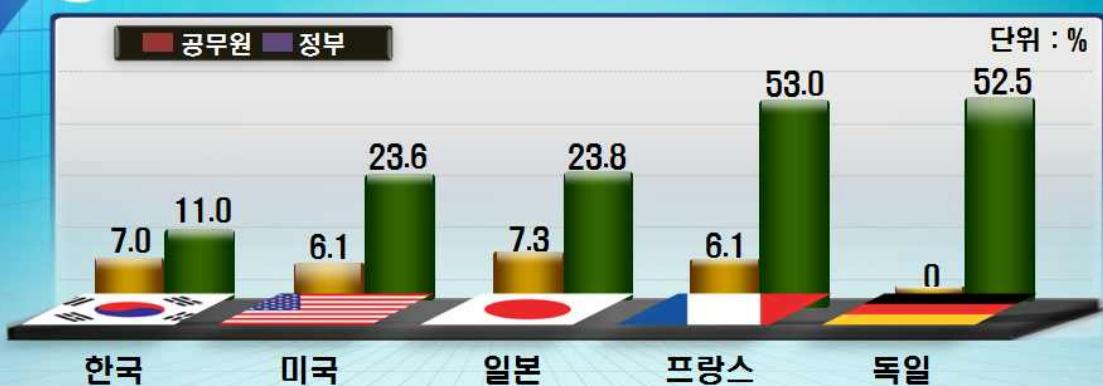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 분	'02	'05	'08	'10	'11	'12
수 입	34,296	40,935	48,605	59,828	65,813	71,990
지 출	30,520	47,031	62,899	72,899	79,390	88,949
수급자수	168,506	215,745	276,829	308,233	323,278	345,144
연금수지	3,776	-6,096	-14,294	-13,071	-13,577	-16,959

37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 원인

3 외국 정부 대비 낮은 정부 부담률(정부부담/보수예산)



구 分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프 랑 스
공무원 부담률	7%	7.3%	6.1%	(없음)	6.1%
정부 부담률	11%	23.8%	23.6%	52.5%	53.0%
GDP대비 정부부담률	0.5%	1%	2.1%	1.9%	3.4%

38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 원인



4 정부의 연금기금 부당사용 및 수급자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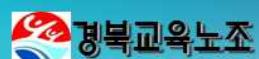
건 명	부당사용 및 정부부담금 미납
'98 IMF 당시 구조조정 (11만여명 감원)	퇴직일시금 4조 7,169억원 지급
2005년 철도청 공사화 (3만9천명 퇴직)	퇴직일시금 2,277여억원 지급
'83 ~'00 군복무 경력자 소급부담금 미납 (정부 부담금)	5,863억원
퇴직수당 ('92 ~'95 정부 부담금)	6,144억원
부당사용 및 정부부담금 총액	6조 1,453억원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금수급자 양산

연금수급자 총수	자연퇴직자	구조조정 퇴직자
34만 5천명	19만 6천명 (57%)	14만 9천명 (43%)

39

각국 연금의 소득대체율 비교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이유

- 공무원연금 결정은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 등 불이익도 고려하고 있음
 - 노동 3권 제약, 영리활동 및 경직 제한, 정치활동 불가, 민간보다 낮은 보수 등
 - 높은 도덕성(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시 징계 등 공직 박탈, 연금도 1/2까지 감액
-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선진외국도 공무원연금수준이 민간보다 유리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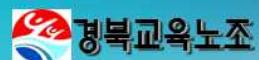
공무원연금공단 위원 현황



구 분		운영위원회(20명), 심사소위원회(7명) 위원소속
지 명 직	위원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
	연금관련 부처국장(5)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소), 보건복지부
	공무원 단체(4)	교총(소), 전국우정노조, 중앙부처노조(소), 공무원노총
	연금 수급자(2)	한국금융연구원(소), 국세동우회
	시민단체(2)	경실련, 행정개혁시민연합(소)
	연금 전문가(6)	공무원연금공단(소), 건국대, 가천대(소위원장) 중앙대, 서울대, 한국금융연구원

41

안행부 및 노조의 동향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 동향

- 매일경제 : 안행부 실무진과 연금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 TF팀 구성 비공개 회의
- 안행부 :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준비할지 연구하고 논의하기
위한 모임

공무원노총 연금위원회 대응방안

- 언론보도 : 맞대응하여 논쟁을 키우기보다 차분히 대응
- 연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악저지를 위한 정책논리 개발
- 안행부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

42

공무원연금 대책방안

활동
계획

▣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 공무원연금의 합리적인 대책방안 모색 및 논리 개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운영현황 및 정보공유

▣ 투쟁을 통한 공무원의 목소리 전달

- 기자회견, 항의방문, 국회/대정부 활동, 토론회 등 투쟁

고민

- 수급자 증가에 따른 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 연금 적자분을 국가에서 지원하여야 논리 개발 필요

43

IV

2009년 연금법 개정안 해설

개정안 주요내용

■ 기여금 인상 : 현행 과세소득 5.5% → 7.0% 인상

(6.3%(10) → 6.7%(11) → 7.0%(12))

■ 연금 지급률 인하 : 2.1% → 1.9%

※ 추가 인하 검토되었으나 원안 유지

- 1기 발전위안 1.7%, 2기 발전위 검토안 1.435%

- 소득대체율 현행 50.8% 수준 유지 (연금기준 변경으로 인함)

→ 10년차까지 50.8% 유지 ~ 신규 47.0% 수준 (30년 가입자)

■ 유족연금 지급률 : 70% → 60% (신규부터)

※ 추가 삭감 의견 있었으나 원안 유지

45

개정안 주요내용[계속]

■ 소득상한 설정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 소득상한 강화 의견 제기되었으나 원안 유지

■ 연금 산정기준 :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 평균

→ 전체 재직기간 과세소득 평균

※ 제도개선 차원 도입, 이 자체로 연금지급률에 영향 없음

※ 개정전 재직기간은 종전법 적용, 이후 부터만 개정법 적용 됨.

※ 시행일 : 법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

46

개정안 주요내용[계속]

항 목	현 행	개 정
퇴직소득 구조개편 여부		연금개혁은 모수개혁방향으로 추진 (다층체계가 아닌 현행 단층체계로)
신규·재직자분리 적용 여부		제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동일 제도 적용
연금보수 산정 기준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기준소득 (과세소득 적용, 단 개인별 편차가 큰 성과급,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는 직급별 평균으로 계산함)
급여산정 기준	퇴직전 3년 평균	전기간 평균(개정 이후부터 적용)
기여금	보수월액 * 8.5% (과세 소득 5.525%)	기준소득 * 6.3% (10년) 6.7% (11년) 7.0% (12년)
급여산식	보수월액 * (재직기간 20%)+10%	기준소득 * 재직기간 * 1.9% - 기준소득 재직기간별 단계적 이행 (10년) <u>소득대체율 10년차 50.8% ~ 신규 47.0% 수준</u> <u>(현행 소득대체율 50.8%)</u>

47

개정안 주요내용[계속]

항 목	현 행	개 정
연금지급개시연령	60세	60세 → 65세 (신규부터 적용)
연장	(경과규정 有)	* 재직자는 현행 경과규정 유지
연금액 조정	CPI + 정책조정	CPI (정책조정 단계적 폐지)
유족연금	퇴직연금 * 70%	70% → 60% (신규부터 적용)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있음	유지
소득상한제	없음	전체공무원 평균보수의 1.8배 (07년 기준 월 612만원 이상 고소득자 연금제한)
공적연금간연계	없음	20년 미만 재직자는 국민연금과 연계
연금제도-기금운영기구 참여 확대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 노조참여 제도화

주)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산식 적용

48

개정안 주요내용(계속)

▣ 기타 정부에서 일부 추가, 수정된 내용

소득심사 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연금법에 있는 제도인 소득심사제 강화 - 연금감액 비율 상향조정 및 기준 수급자에게도 적용 (10%-50% → 30%-70%) <p><해설></p> <p>소득심사제: 퇴직 후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07년 268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연금 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비례하여 최고 1/2까지 연금에서 감액 (1/2초과할 수 없음) 																			
	<table border="1"> <thead> <tr> <th>초과소득</th> <th>지급정지액(현행)</th> <th>지급정지액(수정안)</th> </tr> </thead> <tbody> <tr> <td>50만원 이하</td> <td>초과소득액×10%</td> <td>초과소득액×30%</td> </tr> <tr> <td>50만원 초과~100만원</td> <td>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액×20%)</td> <td>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액×40%)</td> </tr> <tr> <td>100만원 초과~150만원</td> <td>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액×30%)</td> <td>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액×50%)</td> </tr> <tr> <td>150만원 초과~200만원</td> <td>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액×40%)</td> <td>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액×60%)</td> </tr> <tr> <td>200만원 초과</td> <td>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액×50%)</td> <td>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액×70%)</td> </tr> </tbody> </table> <p>※ 예시 : 50%이상 근로자 평균임금을 270만원으로 가정하고, 200만원 연금을 받고, 320만원의 추가 근로 소득이 있다면 현행법에 의해 연금에서 5만원 감액되던 것이 15만원 감액으로 강화됨.</p>			초과소득	지급정지액(현행)	지급정지액(수정안)	50만원 이하	초과소득액×10%	초과소득액×30%	50만원 초과~100만원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액×20%)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액×40%)	100만원 초과~150만원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액×30%)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액×50%)	150만원 초과~200만원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액×40%)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액×60%)	200만원 초과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액×50%)
초과소득	지급정지액(현행)	지급정지액(수정안)																		
50만원 이하	초과소득액×10%	초과소득액×30%																		
50만원 초과~100만원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액×20%)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액×40%)																		
100만원 초과~150만원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액×30%)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액×50%)																		
150만원 초과~200만원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액×40%)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액×60%)																		
200만원 초과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액×50%)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액×70%)																		

49

개정안 주요내용(계속)

▣ 기타 정부에서 일부 추가, 수정된 내용(계속)

형벌시 연금감액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 받았을 시 연금 감액 - (정부안) :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 제외 - (수정안) : 연금감액 제외대상에 직무상 관련없는 과실범 외에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과실범의 경우도 감액대상에서 추가 제외
재직기간 합산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간 2년 - (정부안) : 재직자,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간 2년은 폐지하여, 공무원의 선택권 확대 - (수정안) : 정부안에 추가하여 기 퇴직자, 재직기간 합산을 2006년 1월 1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소급적용 추가 (1996년~2005년 퇴직자에게도 합산허용)
연금액 조정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물가인상률+정책조정 - (정부안) : 현행 물가인상률+정책조정 => 물가인상률로만 적용 (단, 10년 이행기간 둠) - (수정안) : 연금액을 물가변동률로만 조정하되, 이행기간 기간 단축 (10년 → 5년)
순직보상 인정범위 확대 및 순직유족보상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재해현장에서 사망시에만 인정 - (수정안) : 화재진압 출동·구조 중 사망시에도 인정 <p>* 순직유족보상금 : 1억 3천만원 → 1억 5천만원</p>

50

개정안 주요내용[계속]

■ [참고] 공무원연금법 개정 경과

- 2006. 5월 ~ 10월 : KDI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 2006. 7월 ~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연금발전위) 구성·운영
- 2007. 1. 10 : 연금발전위 1차 정책건의안 발표
- 2007. 7월 ~ :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건의안 제검토
- 2008. 6월 ~ : 연금발전위 확대개편 [민공노, 전공노, 공노총, 전교조, 교총 5개 단체 참여]
- 2008. 4월 ~ [현재] : 공무원·교원노조 공동 대응 및 실천 전개

◆ 5.3 총궐기 등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개악을 저지하고 논의기구 참여 쟁취
◆ 공무원연금 공동대책회의 결성 및 20차 대책회의 개최
◆ 올바른 공무원연금 개혁 공동투쟁본부 결성 (2008. 9. 3)
29차 회의 개최 및 행안부, 국회, 대안로 대응사업 등 전개
◆ 11.22 공무원·교원 노동자 총궐기 대회 개최 (5만 조합원 참여)
◆ 공동기자회견, 대국회 사업 및 지역별 의원면담 사업 등 지속 전개

- 2008. 6월 ~ : 연금발전위 5회 전체회의, 14회 소위원회 개최
- 2008. 9. 23 : 연금발전위 사회적합의안 타결 및 발표 [2008.9.24]

51

개정안 주요내용[계속]

■ [참고] 공무원연금법 개정 경과(계속)

- 2008. 10. 6 : 행안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적합의안 원안 수용)
- 2008. 10. 14 : 행안부 주최 공청회 개최
- 2008. 11. 7 : 정부안 국회 제출
- 2008. 11. 10 : 정부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2008. 11. 25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상정 및 소위원회
- 2008. 12. 11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 개최
 -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 2009. 7. 22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대안의결
- 2009. 9. 2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의결
- 2009. 12. 30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결
- 2009. 12. 30 : 국회 본회의 통과

52

언젠가 개울은 알게 될 것이다.
제가 곧 바다의 출발이며 완성이었음을...
동지들의 힘이 “맑은행정” 구현을 통해
조합원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 석문호흡(건강한 숨 건강한 삶)

석문호흡 안동선역장 일평 이상원

I. 들어가면서...

병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한의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 1) 내부요인 : 칠정(七情=즐거움, 슬픔, 욕심, 화, 미움, 사랑, 기쁨)과 스트레스 등
- 2) 외부요인 : 바이러스,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외상 등
- 3) 불내불외 요인 : 내적인 것도 외적인 것도 아닌 요인 (음식, 과음, 과로, 방사, 체질, 어혈, 약물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위염, 신경증, 비만, 우울증, 설사, 변비, 불면증 등)을 많이 겪습니다. 스트레스가 과잉되면 몸안의 통로인 경락이 약해지고 장부도 병적인 상태가 됩니다. 정신력도 떨어지고 면역성도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몸의 조화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해지고 싶어 하지만 그 방법은 잘 모릅니다. 아프다고 약만 먹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물에 대한 내성 때문에 더 강한 약을 쓰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건강은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몸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요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저항력을 길려 스스로 병의 침입을 막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항상 조화롭게 해야 합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균형 잡히고 편안한 상태가 바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방법 중 하나가, 호흡 수련을 통해 기운을 모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석문호흡 수련법입니다.

그리면 석문호흡을 하면 어떻게 건강이 좋아지는지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병의 원인은 기혈의 막힘과 부조화에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阴陽으로 되어있듯이 우리의 몸도 음양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상체는 양(火의 기운)으로 보고, 하체는 음(水의 기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陽인 火의 기운을 밑으로 끌어내리고, 陰인 水의 기운을 위로 옮겨주어 기혈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조화이고, 순환이 되지 못하는 것이 부조화입니다.

석문호흡을 하면 아랫배로 숨을 쉬게 되어 장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복부에 정체된 기혈을 순환 시킵니다. 그럼에 따라 몸도 가벼워지고, 호흡 수련을 통해 석문단전에 기운이 쌓이게 되어 그 기운이 막힌 기혈을 풀어주어 치료효과를 높이게 됩니다.

정신적인 편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신경증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하려면 머리가 시원하고 발은 따뜻해야 하는데, 기혈의 순환이 되지 않을 시에는 열이 머리에 몰리고, 잠이 안 오고, 뒷목도 당기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심하면 우울증이 되기도 합니다. 석문혈은 몸과 마음의 중심이므로, 머리에 쌓인 열을 호흡과 접중을 통해 석문단전으로 잡아줍니다. 즉, 뇌파를 차분하게 가라앉혀 베타파 상태에서 알파파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빠른 베타파 - 스트레스 / 베타파 - 일상 / 알파파 - 편안함, 이완 / 세타파 - 수면) 알파파 상태가 되면 정신적인 편안함은 물론 베타엔돌핀이 분비되어 암예방과 면역력 증대 등으로 각종 질병을 스스로 예방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면 호흡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하고 또한 기란 무엇이며, 단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석문호흡을 통한 효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호흡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공기를 체내로 유입시켜 에너지를 제공하고 몸에 유해한 가스를 몸 밖으로 배출하여 생명력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력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공기 속의 산소, 수소, 질소 등으로만 유지되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천지간에 존재하기는 하나 형체도 없고 맛도 없고 잘 느낄 수 없는 본질적인 힘인 기(氣)라는 것입니다. 이 기(氣)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통해서 혹은 곡식을 통해서 몸으로 유입되어 여러 가지 현묘한 작용을 일으켜 몸을 자양시키고 정화시켜 자생력과 면역성을 키웁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아주 먼 옛날부터 알고 있었으니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2] 호흡의 중요성

인간은 앞서 언급한 천지의 기운을 흡입해서 살아가지만 그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먼저 인간이 음식을 굶으면 50일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1주일 정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호흡을 하지 않으면 단 몇 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호흡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호흡에 비유해보면 먼저 유아기 때에는 대체적으로 호흡을 배꼽 밑으로 하는데 이를 태식호흡 혹은 석문(단전)호흡이라고 하고 유년기에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가면 갈수록 호흡이 점점 더 위로 올라가서 임종에 이르게 되면 목에서 숨을 헐떡거리다 마침내는 머리끝 백회에 이르러 숨이 끊어져 죽게 됩니다.

따라서 호흡을 급하게 그리고 강하게 하면 머리끝 백회로의 상승을 가속화시켜 어떤 면에서는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건강과 생명력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호흡 관리가 중요하며 자신의 호흡을 관리한다는 것은 바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기 때의 호흡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석문(단전)호흡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3] 기란 무엇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氣)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기색이 안 좋다, 원기부족이다, 분위기가 좋다, 살기가 돈다, 군기가 빠졌다, 기운이 세다 등등. 보통 어떠한 분위기나 느낌, 힘의 정도, 그 외의 여러 가지 표현들 속에 기라는 말은 숨어 있습니다. 굳이 호흡 수련이나 한방에 관련되어 쓰이는 전문용어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참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그리고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기라는 말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란 천지만물의 근본으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기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물과 존재양식에는 다 기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라고 하여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도 초목의 기운과 동물의 기운, 사람의 기운이 각각 다르고, 하다못해 생명이 없는 광물체에도 각기 다른 성질의 기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란 이론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 체득하고 직접 운기 해 보아야만 그 실체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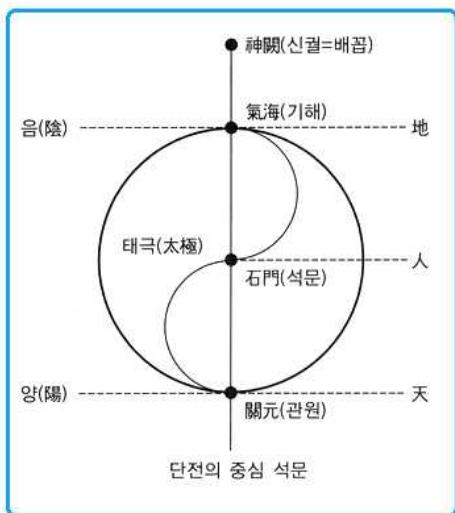
4] 단전이란 무엇인가?

1. 단전의 어원적 해석

단(丹:구슬), 전(田:밭)에서 단이란 구슬을 의미하고 전이란 그 형상에 의할 것 같으면 미닫이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전이란 미닫이문을 열면 그 안에 구슬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는 밭전을 달리 의역하여 농사에서의 밭은 부엌에서의 솔(鼎)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솔 안에 구슬이 생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문을 열면 구슬이 있다>와 <솔 안에 구슬이 생긴다>라는 말은 같은 뜻의 이야기입니다.

2. 단전(석문)의 정확한 위치



석문은 한의학상의 경락 중에서 사람 앞면 정중선을 흐르는 임맥이라는 경락의 배꼽 밑 2촌(寸)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석문호흡에서는 이 석문을 잡는 방법으로 수련자 자신의 두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2촌이라는 단위를 cm나 그와 유사한 측량법으로 재는 것보다는 수련자 자신의 몸 일부분으로 재면 체구에 비례해서 석문 자리를 보다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석문을 단전으로 잡는 이유

단전 자리라 함은 크게는 하복부 전체를, 작게는 기해나 관원 등의 경혈자리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에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그 중심점이 있으며 단전 또한 그 핵심적인 중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석문호흡에서는 이 단전의 중심점을 바로 석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전 자리로 알고 있는 기해나 관원은 그 기운의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기해는 음(陰)적인 성향을, 관원은 양(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해를 단전으로 하여 수련하면 수련이 지나치게 부드럽고 음적으로 되고 관원을 단전으로 수련하면 수련이 힘 위주가 되므로 강하고 양적으로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단전의 중심은 이 음, 양의 두 기운을 조화시키는 기해와 관원의 중간에 위치한 태극의 자리인 석문혈인 것입니다.

석문(石門)을 예로부터 금구, 금침혈 자리로 해 온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에 의한 기운으로만이 굳게 닫힌 돌문을 열어 참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석문호흡의 효과

1) 육체적 효과

수련을 통해서 심신 혀약자 및 성인병과 각종 현대병에 시달리며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생기 넘치는 활력과 육체적인 건강을 되찾게 되며, 정확한 수련법을 착실하게 준수해 가면서 열심히 수련한다면 중국에 가서는 건강도 자연스럽게 되찾게 되는데 이는 호흡에 의한 현묘한 기운의 작용 때문입니다.

2) 정신적 효과

육체적인 차원의 수련을 통해 일차적으로 수련자의 건강을 이룬 이후에 점차적으로 정신수련을 해나가다 보면 이를 뛰어 넘어 정신적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정신적인 차원의 효과입니다. 정신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련자는 생활 중에서 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통들을 겪으며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완성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석문호흡은 이와 같이 육체적인 건강을 획득하여 무병장수를 누리게 되는 차원과 정신적 깨달음에 의한 자아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전혀 상반된 개념처럼 보이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앞뒤와도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정신과 육체가 하나이므로 육체의 건강 없이는 정신의 건강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신의 건강 없이는 육체적 건강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련자가 열심히 수련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그 수련 정도에 따라 정신적인 깨우침을 얻게 되는데 이런 정신적 깨우침을 얻게 되면 부수적으로 육체적인 건강도 괄목할 만큼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II. 수련과정 소개

1. 순서

- 가. 도인체조
- 나. 행공
- 다. 호흡수련
- 라. 회건술

2. 상세 내용

가. 도인체조

1) 체조의 의미

체조(體操)는 근육(筋肉)을 포함한 신체의 여러 기능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공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서서히 적응해 가는 준비 과정이다. 아울러 심리적 이완(弛緩)과 함께 수련에 대한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몸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보통 수련을 중간부터 하거나, 준비 없이 하는 경우에는 본격적인 수련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본 수련의 핵심이 단전에 대한 의식 집중인 만큼, 의식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충분히 이완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 과정을 무시하고 수련을 했을 때 잘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며 초보자일수록 이러한 준비 과정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하게 된다. 따라서 체조는 정확한 동작을 땀이 날 정도로 정성껏 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의 행공이 부드럽고 편하게 된다. 평상시 우리 몸은 근육, 인대(韌帶), 관절(關節)이 경직되어 뻣뻣한 상태이므로 준비운동 없이 힘든 행공을 하면 신체 조직에 무리를 주기 쉽다.

체조의 실시 순서는 심장에서 먼 곳(손, 발)에서 시작해 심장에 가까운 부위로, 그리고 전신의 탄력 운동으로 이어지는데, 이 순서만으로도 준비운동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준비 운동 전에 전신의 근육과 건(腱), 인대 및 관절을 스트레칭으로 풀어 주면 수련에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운동 이론에 보면 체조를 워밍업(warming-up)이라고 하고, 회건술을 정리운동 즉 쿨링다운(cooling-down)이라고 한다. 자동차는 시동을 건 뒤 바로 출발하지 않고 워밍업을 하고 출발하며, 정지한 뒤에 바로 엔진을 끄지 않고 잠시 짬을 두다가 끄는데 이를 냉각 운전(쿨링 다운)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기계인 자동차보다 더욱 정교한 인체의 신체 활동에서 워밍업과 쿨링다운은 당연한 기본 절차다.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왜 만인에게 회자(膾炙)되는지, 이런 의미를 되새기며 최소한 1일 1회 정도라도 스스로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껏 실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2) 체조의 효과

체조(준비운동)는 앞으로 몸에 자극이 가해질 것이라는 예비 신호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 ① 근육의 긴장도를 줄여 충분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 ② 관절과 근육의 가동 범위를 확장하여 동작을 원활하게 한다.
- ③ 유연성을 키워 근육의 부상을 방지한다.
- ④ 근육에게 동작 또는 운동을 시작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 ⑤ 신체 지각력을 발달시킨다(근육에 집중하고 접촉하게 하므로).
- ⑥ 혈액 순환을 촉진시킨다.
- ⑦ 체온이 상승되어 몸이 이완되며 정신적 긴장을 풀어 준다.
- ⑧ 아울러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준다.

3) 체조 명칭 및 순서

순서	체조 명칭	약칭
1	손 털기 짧게(小)	손 털기
2	손 털기 길게(大)	길게
3	발 털기 짧게(小)	발 털기
4	발 털기 길게(大)	길게
5	손목 돌리기	손목 돌리기
6	손목 좌우 꺾기	손목 꺾기
7	손목 상하 꺾기	상하로
8	팔꿈치 관절 뻗어 위로 굽히기(위로 할 때 주먹을 쳤다.)	팔 굽히기
9	팔꿈치 관절 뻗어 안으로 굽히기(안으로 할 때 주먹을 쳤다.)	좌우로
10	엄지손가락 중부 혀에 대고 어깨 돌리기	어깨 돌리기
11	발목 돌리기	발목 돌리기
12	무릎 굽혀 펴기	무릎(굽혀) 펴기
13	무릎 좌우 펴기 짧게(小)	좌우 펴기
14	무릎 좌우 펴기 길게(大)	길게
15	무릎 돌리기	무릎 돌리기
16	허리 돌리기	허리 돌리기
17	팔 펴서 상체 90도 숙여 허리 뒤틀기	상체 뒤틀기
18	팔 펴서 상체 90도 숙여 허리 휘돌리기	휘돌리기
19	몸통운동	몸통운동
20	등배운동	등배운동
21	팔운동	팔운동
22	목 운동 좌우로(左右)	목운동 좌우로
23	목 운동 상하로(上下)	상하로
24	목 운동 돌려주기	돌려주기
25	뜀뛰기 운동	뜀뛰기
26	제기차기 운동 앞으로	제기차기
27	제기차기 운동 뒤로	뒤로
28	제기차기 운동 엇갈리게(엇갈려서)	엇갈리게(엇갈려서)

나. 행공

1). 행공의 의미

행공은 몸을 닦아 나가는 수련으로 총 12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몸에 70퍼센트 마음에 30퍼센트의 비중을 두는 수련법이다.

- 도(道)적인 의미: 보이지 않는 빛의 작용과 기운의 흐름이 연결되면서 그 단계의 수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본인의 내력(內力)과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움으로써 잃어버린 도심을 되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를 크게 가져다준다.
- 기(건강)적인 의미: 각각의 행공 동작은 몸 전체의 경락과 근육을 단련시키며, 육장육부를 회전시켜 준다. 그리고 인체의 시스템에 맞추어 기혈(氣血)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본래 스스로의 몸이 갖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2). 행공의 효과

행공은 빛 수련, 즉 마음 수련의 기초가 되는 몸을 닦아 나가는 수련이다. 또한 그러한 몸 수련이 마음수련과 다르지 않음을, 즉 하나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몸의 상태는 마음에, 마음의 상태는 몸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몸과 마음은 기라는 매개체를 통해 조화를 이뤄 나가는데, 행공과 호흡을 통해 기의 흐름이 조화롭게 되면 육체 또한 긴장이 풀리면서 서서히 이완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완과 편안함은 바로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며, 그 속에서 수련으로 얻은 심득을 통해 스스로의 밝아지기 시작한다.

호흡의 중심에 단전이 있듯이, 행공은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는 힘을 가져다준다. 힘든 동작을 통해 땀을 흘리고 호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인내와 겸허를 배우며, 혼들리지 않는 중지가 세워짐을 몸소 체득해 나가게 된다.

다. 호흡 수련

1) 호흡 수련의 의미

호흡 수련은 마음을 닦아 나가는 수련으로 마음에 70퍼센트, 몸에 30퍼센트 비중을 두는 수련이다. 즉 본 수련인 호흡 수련을 통해 정화, 순화, 승화과정을 거쳐 빛의 상승을 이룸으로써 거듭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 정신 즉 정기신의 빛이 하나로 조화·상생·상합하게 되는 것이다.

2) 호흡 수련의 효과

- ①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준다.
- ② 조급함이 없어지고 성격이 차분해지며 여유로움을 갖게 된다.
- ③ 이해심과 배려심이 생겨나게 된다.
- ④ 스트레스를 풀어 준다.
- 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 ⑥ 숙면을 취하게 되고 피로가 빨리 풀어진다. 불면증 환자에게 특히 좋다.
- ⑦ 마음의 중심을 잡아 준다.
- ⑧ 인성을 충만히 하고 영성을 밝혀 신성(神性-도심)의 회복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다.

라. 회건술

1) 회건술의 의미

회건술(回建術)은 글자 그대로 신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도인술(導引術)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호흡에 맞춰 장기간 실시하다 보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수련 법이다.

회건술은 수련할 때 활발했던 내부 기운의 흐름을 갈무리하고, 육체가 수련 상태에 서 일상적인 상태로 다시 잘 적응하도록 돋는 과정이다. 회건술을 생략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에 사람에 따라 약하게 구토감, 현기증,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는 고요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행동으로 신체의 기능에 부조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흐트러져 그런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 회건술 효과

회건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동작 하나 하나에 깃들은 의미와 함께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호흡에 신경을 쓰지 않고 단순히 스트레칭이나 운동 하듯이 한다면 회건술의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다. 선도의 요체가 조화이듯이, 동작과 호흡 또한 조화를 이루어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몸을 움직이는 동작과 기를 움직이는 호흡도 필수적으로 같이 이뤄야 한다.

보통 회원들이 회건술을 하면 호흡에 맞춰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에 맞춰 호흡하며, 심지어는 호흡을 무시하고 단순히 스트레칭 하듯이 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회건술 동작이 상당히 빠른데 그러한 이유는 호흡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호흡에 맞추어서 회건술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절대로 빠른 동작이 나올 수 없다.

행공에서 호흡이 빠지면 의미가 없듯이 회건술 또한 호흡이 빠지면 건강상의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회건술을 통해 건강을 얻자면 기혈의 흐름이 원활해야 하는데, 기와 혈은 상호 보완적으로 도움을 받아 순행(順行)하기 때문에 기의 흐름을 불러일으키려면 호흡이 필수적으로 따라 와야 한다. 호흡이 단전까지 천천히 그리고 깊이 내려가면서 동작을 일치시키다 보면 회건술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실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회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올바른 지도를 끊임없이 해줘야 한다.

III. 수련단계 소개

총 1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에 따른 특성, 특징, 특색에 따라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세계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이 평범한 상태에서 총체적인 수련을 맛보며 결국에는 선인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를 망라한다고 볼 수 있다.

단전을 형성하면서부터 빛의 깨달음의 경지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달 점검을 통하여 수련의 공부 상태를 점검하여 공부가 진행이 되며 남녀노소 누구나가 수련을 통하여 각 단계마다 비슷한 경험을 느끼고 기와 빛의 세계를 분명하게 느껴 경험에 의한 체득의 공부를 함으로써 단전호흡의 정수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는 짧게 설명한다.

1. 와식

단전 자리 잡기

2. 좌식

단전 축기

3. 대맥

대맥 유통

4. 소주천

임맥과 독맥 유통

5. 온양

진기 소생처 만들기

6. 대주천

천지간의 기운과 교류

7. 일월성법

해. 달. 별과 하나 됨

8. 귀일법

천지 대자연과 하나

9. 풍수법

자연물위 감정을 이해

10. 선인법

사람의 감정을 이해

11. 전신주천

12경락과 8맥 유통

12. 채약

진기의 고체화

13. 기화신

온 몸의 진기화

14. 양신

도체 완성

3. 지방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지원국 총무과 인사담당 정 광 식

I. 지방공무원의 개념 및 종류

1. 지방공무원의 개념

- 가. 공무원의 개념 :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한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자를 말함(광의의 공무원)
- 나. 지방공무원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의 종류

- 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임용주체, 보수부담주체, 근무기관, 담당사무 등을 기준으로 구분
- 나. 지방공무원의 구분 및 종류
 - 1) 경력직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 가) 일반직공무원 나) 특정직공무원
 - 2)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 가) 정무직공무원 나) 별정직공무원

II.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성과관리

1. 임용 및 임용권자

- 가. 임용의 의의
지방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의미
 - 나. 임용권자
 - 1) 교육감 : 시·도교육감은 그 소속 공무원의 고유 임용권을 가진다.(법 제6조)
 - 2) 권한위임 : 행정의 능률화와 간소화를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교육청교육장과 소속기관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
 - 가) 교육감 - 지방공무원 임용, 지방공무원의 중징계
 - 나) 교육장 -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시보해제·관내전보·휴직·직위해제·복직·의원면직·경징계
 - 다. 임용(효력발생) 시기
 - 1) 임용일자 : 임용장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
 - 2)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봄
 - 3) 임용일자는 소급할 수 없음
- ※ 예외 :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면직하는 경우
 공무 사망자의 사망 전일로 추서하는 경우

라. 임용의 종류

구분	종류
발생	신규임용(공개경쟁신규임용, 경력경쟁임용)
변경	승진, 강임, 강등, 전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휴직·직위해제자 등의 직위 복직), 추서(사망자를 상위직급으로 임용), 정직, 직위해제
소멸	면직(의원면직, 직권면직), 해임, 파면

1) 신규임용

- 가) 공개경쟁신규임용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현법상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함
- 나) 경력경쟁임용 : 공개경쟁채용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 유경험자 등 우수 전문 인력을 채용
- 다) 시보임용 : 공무원으로의 적격성 여부를 알아보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면직 가능)

2) 승진임용

- 가) 의의 : 하위계급 재직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종적인 계급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 증대를 수반하는 한편 보수증액, 성취감, 능력인정 등의 사유로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침
- 나) 승진의 종류
 - (1) 일반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되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배수에 해당하는 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2) 특별승진 : 청백리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시행자, 명예퇴직자, 공무로 사망한 자
 - (3) 근속승진 : 계급별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하고 근속승진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4) 우대승진
 - (5) 강임자의 우선승진

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 일반직공무원
 - 3급 이상 : 2년 이상 4급 : 3년 이상
 - 5급 : 4년 이상 6급 : 3년 6개월 이상
 - 7급 및 8급 : 2년 이상 9급 : 1년 6개월 이상

3) 전보임용

가) 원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 (1)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 도모
-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전보 실시
- (3) 보직관리의 일반원칙(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 (가) 생활근거지 고려 (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임직위 재보직 불가

나) 제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 (1)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직위에 전보 금지
-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형사 사건에 혐의가 있는 자, 시보임용 중에 있는 자 등은 예외적용 가능

2. 근무성적평정

가. 개념 :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 태도 등을 평가하여 기록하고 활용하는 인사행정 기능

나. 적용대상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다. 평정시기

1) 정기평정 :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연2회)

2) 수시평정 : 정기평정 후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

라. 근무성적평정 항목 및 평정등급 : 근무실적(50점)과 직무수행능력(50점)의 합산점을 탁월(100점~90점), 우수(89점~80점), 보통(79점~70점), 미흡(69점~60점), 불량(59점 이하)의 5단계로 등급 결정

마.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직렬	구분	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지역 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특수)학교		
			담당관	국								
전직렬	5급	평정자	전문위원	담당관	국장	기관장	교육장			학교장		
		확인자					부교육감					
○ 행정직	6급	평정자	담당 사무관	담당관	과장	과장 (부장)	과장	○5급기관 : 기관장 ○6급이하 기관 : 행정지원과장	학교장	학교장		
		확인자	전문위원	부교육 감	국장	기관장	교육장			행정 지원 국장		
○ 울릉군 지역 근무자 전직렬	7급 이하	평정자	담당 사무관	담당 사무관	담당 사무관	과장 (부장)	과장	○5급이하 기관 : 기관장	학교장	학교장		
		확인자	전문위원	담당관	과장	기관장	교육장			행정 지원 국장		
○ 행정직 제외한 전직렬	6급	평정자	전문위원	담당관	과장	기관장	○과장 ○국장 (포항)	○5급기관 : 기관장 ○6급이하 기관 : 행정지원과장	학교장	학교장		
		확인자					부교육감					
○ 울릉군 지역 근무자 제외	7급 이하	평정자	담당 사무관	담당 사무관	과장	기관장	○과장 ○국장 (포항)	○5급이하 기관 : 기관장	학교장	학교장		
		확인자					부교육감					
○ 종전 기능직 전직렬	6급 이하	평정자	담당 사무관	담당 사무관	담당 사무관	과장	○과장 ○국장 (포항)	기관장	학교장	학교장		
		확인자	전문위원	담당관	과장	기관장	교육장			행정 지원 국장		

3.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가. 작성대상 : 5급 이하 공무원 중 승진요건을 갖춘 자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 제외자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승진임용이 제한중인 자
- 강임된 자(명단 별도 관리) - ※ 강임된 직급에서도 근무성적평정은 실시

나. 작성기준일

- 1) 정기 :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기준
- 2) 수시 : 명부작성 후 조정 및 삭제사유가 발생한 때
- 3) 작성단위 :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

다. 효력발생일

- 1) 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 2)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라. 승진후보자명부 구성비율

구 分	계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가점평정점
평정점수	100점	70점	30점	8.18점(특수지0.63, 자격0.5,
반영비율	100%	70%	30%	외국어0.25, 실적5, 인사교류1.8)

마. 근무성적평정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구 分	반영기간	반영비율
5급	최근 3년	
6·7급	최근 2년	각 기간별로 동일하게 반영
8급 이하	최근 1년	

4. 교육훈련

가. 목적 :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공무원의 가치관과 태도를 발전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
나. 교육훈련의 종류

- 1) 기본교육 :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신규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 2) 전문교육 : 담당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 3) 기타교육 :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여 또는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직무관련 학습·연구 활동을 포함한 교육

다.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

- 1) 연간 최저 교육 이수시간 설정

구분	일반직공무원(5급 이하)	종전 기능직공무원	종전 별정직공무원
2014년	80시간	30시간	30시간

- 2) 교육·학습 유형별 교육 구분

구분	기관주관교육훈련	개인학습
교육·학습 유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교육 • 민간교육기관교육 • 국내·외위탁교육 • 직무관련 워크숍 • 학습동아리, 제안, 연구·경진대회 •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학원 등 교육 • 대학·대학원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직무관련 연구모임, 세미나, 학술대회 등 • 직무관련 전문서적 연구(독서) • 직무관련 노하우 등 보고서, 저술 • 논문(칼럼) 게재

III. 지방공무원 복무

1. 복무

가. 근무일과 근무시간

※ 용어의 정의

- 출근 :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 지참 : 정해진 근무 장소에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 조퇴 : 정해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 퇴근 : 그 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 장소를 떠나는 것
-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

1) 교육행정기관

- 가) 근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 제외
○ 토요일은 휴무함이 원칙이나 토요민원 상황실 설치 운영
○ 직무의 성질 · 지역 또는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함

2) 도서관 및 정보센터

- 가) 근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 제외
○ 토요일, 일요일 근무(1째/3째 또는 2째/4째 월요일 휴관, 근무조 편성 근무)

나) 근무시간

- 개관일의 경우 정규근무시간 이후 통상적으로 23시까지 근무조 편성 근무

3) 학교

- 가) 근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 제외
나) 근무시간 :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 실시함

나. 출장

1) 개요

- 가) 상사의 명을 받고서 정규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나) 출장에는 장소 · 소요시간에 따라 ‘근무지내 · 외 출장’으로 나눔

2) 출장공무원의 의무

- 가) 출장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됨
나)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함
다)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함.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갈음할 수 있음

다. 휴가

1) 휴가의 종류

가) 연가

- (1) 공무원이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을 취하여 근무능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사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2)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6년 이상	21일

나) 병가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2) 병가기간

(가)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 : 연 60일 이내

(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 연 180일 이내

다)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위치에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라) 특별휴가

(1)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유로서 인정되는 경조사 등의 처리를 위하여 부여받는 휴가

(2) 휴가일수

경조사별 휴가 일수			기타 특별휴가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출산휴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	90일
	자녀, 본인 및 배우자 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여성보건휴가	임신한 경우 검진	매월 1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 자의 부모	5		매 생리기	무급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육아시간	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	매일 1시간 (생후1년까지)
	자녀와 그 자녀의 배 우자	2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일수
입양	본인	20	재해구호휴가	재해피해공무원, 재해지역 자원봉사공무원	5일 이내
			유산또는 사산휴가	임신기간이 11주~28주 이 상중 유산하거나 사산	유산하거나 사산한날부터 5~90일
			불임치료휴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등 불임치료 시술	시술당일 1일 (체외 시술 추가1일)

2) 휴가의 법적 성질

가) 휴가는 출근을 전제로 함. 따라서 출근의무가 없는 휴직, 정직, 직위해제 중에 있는 공무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나) 휴가는 자율신청에 의함. 다만 비상근무명령이 발령된 상황에서는 제한이 됨

다) 휴가신청에 대한 허가는 기속재량임.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자의 업무형편, 부서 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거부를 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휴가가 신청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주어야 함

IV. 지방공무원 징계

1. 징계사유(법 제69조)

- 가. 지방공무원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례, 규칙 위반
- 나.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태만
- 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직무내·외를 불문함)

2. 징계의 종류와 효력(법 제70조 내지 법 제71조)

종류 구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성격		공무원관계로부 터 배제	좌동	1계급 강등 3월 정직	신분은 보유, 직무종사불가	보수감액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처분기간				3월	1~3월	1~3월	
신 분	재임용제한	5년	3년				
	승진·승급제한, 승진소요최저년수 불산입			처분기간 3월 +18월	처분기간 +18월	처분기간 +12월	6월
	경력평정 기간제외			처분기간	처분기간		
보 수 · 퇴 직 금 여	퇴직급여감액	1/4감(5년미만) 1/2감(5년이상)	일반해임은 상관없 고 금품 및 공금횡 령일 경우 해당 1/8감액(5년미만) 1/4감액(5년이상)				
	보수감액	일할계산, 기말수당, 부지급	좌 동	2/3감액 (연봉적용자는 3할)	2/3감액 (연봉적용자는 3할)	1/3감액 (연봉월액의 6 할지급)	
	정근수당	부지급	부지급	부지급	부지급	부지급	부지급
	대우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부지급	2/3감액	1/3감액	
	정근수당가산금	일할계산	일할계산	부지급	2/3감액	1/3감액	
	가족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부지급	2/3감액	1/3감액	
	자녀학비보조 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부지급	2/3감액	1/3감액	
				2/3감액	2/3감액	1/3감액	

3. 징계와 직위해제, 직권면직

- 가. 직위해제 : 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
- 나. 직권면직 : 처분의 사유와 효과면에서 징계면직처분(파면·해임)과 구별되지만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파면·해임과 같음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 서 대변 하겠습니다 !

II. 단체교섭 진행 사항

□당초요구안:전문,본문62조130항,부칙4조5항

[총의제수:142건, 교섭결과:원안수용:45건, 수정수용:80건, 수용불가:14건, 기타(조항삭제):3건]

순	조항	단체교섭 요구안	주관부서	협의결과	최종 합의안
		전 문			전 문
1	전문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은 헌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근본취지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복리를 증진하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공무원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 협약(이하 "협약"이라한다)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한다.	행정지원과	수용	
		제1장 총칙			제1장 총 칙
2	제1조	제1조【적용 범위】 이 협약은 교육감과 조합 및 조합원에 적용한다.	행정지원과	수용	
3	제2조1	제2조【성실의의무】 ① 교육감과 조합은 상호 이해와 신뢰로 써신 속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성실히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교육감과 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존중 한다.
4	제2조2	② 교육감과 조합은 본 협약과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행정지원과	조항 삭제	제3조 1항과 통합
5	제3조	제3조【자치법규의제·개정】 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로 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 및 훈령(행정지침 포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지원과	수용	
6	제4조1	제4조【협약의 우선 및 조합 활동 권리 저하의 금지】 ① 본 협약이 지방 공무원의 근로 기준 또는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조례·규칙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위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 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본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7	제4조2	② 교육감은 기존의 근로 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기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	조항 삭제	제4조 1항과 통합
		제2장 조합 활동			제2장 조합 활동
8	제5조1	제5조【노동조합 활동 보장】 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 운영을 방해 또는 조합 운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① 교육감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조합 운영에 대하여 방해 또는 개입하지 아니하며,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순	조항	단체교섭 요구안	주관부서	협의결과	최종 합의안
9	제5조2	②조합활동은근무시간외에행함을원칙으로한다.다만,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교육감과협의를거쳐근무시간중에도조합활동을할수있다. 1. 조합원 총회 2. 정기·임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 회의 3. 정책협의회, 단체교섭 및 상급단체 회의 참석 4. 기타 교육감과 조합간 합의한 사항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②조합활동은근무시간외에행함을원칙으로한다.다만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교육감과협의를거쳐근무시간중에도조합활동을할수있다. 1. 조합원 총회 2. 정기·임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 회의 3.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및 상급단체회의 참석 4. 기타 교육감과 조합간 합의한 사항
10	제5조3	③교육감은공무원연수기관에서실시하는지방공무원연수시2시간의공무원노동관련과목이운영될수있도록교육연수원장에게지도하고,기타필요한사항은조합과협의하도록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③교육감은공무원연수기관에서실시하는지방공무원연수시신규직원연수(2시간이상)및전문교육개발(가급적)시공무원노동관계관련교과목이편성·운용될수있도록적극권장한다.
11	제5조4	④교육감은업무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군지역별로학교의동·하계휴가중각2시간이내의조합원연수시간을부여한다.	행정지원과	수용	
12	제5조5	⑤교육감은조합및지부의중요간부(선출직)에대한인사발령시노조활동에지장이없도록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⑤교육감은 조합 및 지부의 중요간부(선출직)에 대한 인사발령 시 노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13	제6조	제6조【부당노동행위금지】교육감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에규정된부당노동행위를하지않는다.	행정지원과	수용	
14	제7조1	제7조【시설편의제공】①교육감은조합에노동조합사무실을제공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①교육감은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다.
15	제7조2	②교육감은조합활동에필요한집기,사무기기등비품을요구할경우예산의범위내에서제공한다.	행정지원과	수용	
16	제7조3	③교육감은조합이각종회의또는교육을위하여장소,통신및방송망등을이용하고자하는경우당해기관의관리·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제반시설물을이용할수있도록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③교육감은 조합이 각종 회의 또는 교육을 위하여 장소, 통신 및 방송망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7	제7조4	④교육감은교육감이관할하는각종시설을조합이사용요청할경우적법한절차를거쳐당해기관의관리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사용할수있도록협조한다.	재무정보과	수정수용	④교육감은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학교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당해 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도록 지도한다.
18	제8조	제8조【조합의교육행정관련행사지원】교육감은경북교육발전과건전한직장문화조성을위하여 조합이주관하는교육행정관련연구행사에타당성을검토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행·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교육감은 경북교육발전과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행정 관련연구 행사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9	제9조1-1	제9조【통지의협조】교육감과조합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상호통지하도록협조한다. ①교육감이조합에통지할사항 1. 공무원단체관련 각종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폐(홈페이지 게재로 대체가능)	행정지원과	수용	
20	제9조1-2	2. 지방공무원의 정기 인사발령 사항	총무과	수용	
21	제9조1-3	3. 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	행정지원과	수용	
22	제9조1-4	4. 교육통계연보 및 교육수첩	행정지원과	수용	

순	조항	단체교섭 요구안	주관부서	협의결과	최종 합의안
23	제9조1-5	5. 각급학교로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	행정지원과	수용	
24	제9조2	②조합이 교육감에 통지할 사항 1. 규약·규정의 변경사항 2. 조합기구표 및 조합 임원 명단 3.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행정지원과	수용	
25	제10조	제10조【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교육감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한 문서·자료·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조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교육감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한 문서·자료·정보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제공 요청이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조한다.
26	제11조	제11조【홍보활동보장】 교육감은 조합이 각급 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조합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교육감은 조합이 각급 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조합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3장 인사 및 조직			제3장 인사 및 조직
27	제12조1	제12조【조직·인력적정배분】 ① 교육감은 관할 전체 조직의 업무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을 적정 배분 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① 교육감은 관할 전체 조직의 업무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을 적정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8	제12조2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수립시 업무량과 기능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수립시 업무량과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노력한다.
29	제12조3	③ 교육감은 정보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서를 통합 운영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③ 교육감은 정보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를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0	제12조4	④ 교육감은 전문직렬(소수직렬)의 경우 상위직급의 정원책정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거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 비율과 형평성에 맞도록 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④ 교육감은 전문직렬(소수직렬)의 경우 상위직급의 정원책정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거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 비율과 형평성에 맞추도록 노력한다.
31	제12조5	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결원 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결원 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에 노력한다.
32	제12조6	⑥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업무 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⑥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업무 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33	제12조7	⑦ 교육감은 각급학교 행정실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행정실을 확대(학사 및 재정) 개편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⑦ 교육감은 각급학교 행정실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행정실이 확대(학사 및 재정)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4	제13조1	제13조【일반직공무원처우개선】 ① 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한 일반직의 상위직급 정원비율이 조기 예 100%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① 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한 일반직의 상위직급 정원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5	제13조2	② 교육감은 소규모학교 1인 행정실장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② 교육감은 소규모학교 1인 행정실장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36	제13조3	③ 교육감은 공립 유치원 행정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③ 교육감은 공립 유치원 행정전담 인력이 연차적으로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37	제13조4	④ 교육감은 6급이하 지방공무원과의 정기 간담회를 년 2회 개최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④ 교육감은 6급이하 지방공무원과의 정기 간담회를 년 2회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38	제13조5	⑤ 교육감은 학교장 부재시 징수 및 원인행위를 대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회계관련 전결위임 규정)	재무정보과	수용	

순	조항	단체교섭 요구안	주관부서	협의결과	최종 합의안
39	제13조6	⑥교육감은 청렴업무 관련 공문 시행을 교원과 분리하여 시행한다.	감사관	수용불가	본교섭 상정
40	제14조1	제14조【기능직공무원처우개선】①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시 승진·보수 등 처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①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시 관련 규정에 따라 승진·보수 등 처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	제14조2	②교육감은 일반직전환시험등으로 상위직급과원이 발생한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여야 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②교육감은 일반직 전환시험 등으로 상위직급 과원이 발생한 기능직공무원의 인사 적체가 해소되도록 노력한다.
42	제14조3	③교육감은 학교통학차량 운전원의 조기 출근에 따른 시간외 근무시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기획조정관	수용	
43	제14조4	④교육감은 조무원이 소규모학교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④교육감은 조무원(시설관리원)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학교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4	제14조5	⑤교육감은 조무원 등 현장에서 시설물을 관리·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시설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⑤교육감은 조무원 등 현장에서 시설물을 관리·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시설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원장에게 권장한다.
45	제15조	제15조【각급학교근무시간】교육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총무과	수용불가	본교섭 상정
46	제16조	제16조【전보인사시조합원의 고충 및 민원 반영】교육감은 정기인사 시 지방공무원의 인사 고충과 민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교육감은 정기 인사 시 지방공무원의 인사 고충과 민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7	제17조	제17조【지방공무원의 인사 발표 시기 개선】교육감은 정기인사(1월, 7월) 시 7일 전 인사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교육감은 정기인사(1월, 7월) 시 7일 전 인사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8	제18조1	제18조【인사예고제 실시】①교육감은 정기인사 시 승진과 전보에 관한 인사 개요를 예고하도록 한다.	총무과	수용	
49	제18조2	②교육감은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총무과	수용	
50	제19조1	제19조【모범공무원 등 표창 제도의 합리적 개선】①교육감은 표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수상자의 재직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안배를 기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한다.	총무과	수용	
51	제19조1	②교육감은 경북교육상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교육과정과	수정수용	②교육감은 경북교육상에 교육행정분야가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52	제20조1	제20조【공정한 인사제도 정착】①교육감은 근무 평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①교육감은 근무 평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53	제20조1	②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 비정규직 업무 전담팀을 운영하도록 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②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 비정규직 업무 전담팀을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54	제20조1	③조합은 노동조건 개선 및 근무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정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	수용	
55	제20조1	④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필수 실무요원 선발 인원 및 기준을 직렬별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④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필수 실무요원 선발 인원 및 기준을 직렬별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

순	조항	단체교섭 요구안	주관부서	협의결과	최종 합의안
56	제21조	제21조【도교육청근무자기준개선】교육감은 도교육청근무자의 근무연한을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학교경력자가 도교육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교육감은 도교육청 근무자를 선발할 때 학교근무 경력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7	제22조1	제22조【도서관전담인력확보】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해당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해당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8	제22조1	② 교육감은 공공도서관 분관근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주말 및 공휴일 근무시 인력의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행정지원과	수용	
59	제22조1	③ 교육감은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사무직렬의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시 사서직 정원으로 충원하도록 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③ 교육감은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사무직렬의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시 사서직 정원으로 충원되도록 노력한다.
		제4장지방공무원처우개선			제4장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60	제23조	제23조【공무원연수제도개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총무과	수용	
61	제24조1	제24조【국외연수확대】① 교육감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기회 확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총무과	수용	
62	제24조2	② 교육감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에게도 공로연수를 실시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들에게도 공로연수가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63	제25조	제25조【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 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직장동호인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총무과	수용	
64	제26조	제26조【보직관리규정정비】 교육감은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개정 시 노조가 추천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교육감은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개정 시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65	제27조1	제27조【수당신설 등】①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놀이시설 관리, 소방안전 관리, 전기 안전 관리 등의 업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기획조정관	수용불가	수용
66	제27조2	② 교육감은 「경상북도 공립 학교 회계 규칙」 개정을 통하여 각급 학교 행정실 근무자 방공무원에게 업무 수당을 신설한다. 1. 5급 이상 : 월 10만 원 2. 6급 이하 : 월 8만 원	기획조정관	수용불가	수용
67	제27조3	③ 교육감은 학교에서 정부 시책 사업 및 각종 연구·시범학교 등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무원도 교원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③ 교육감은 학교에서 정부 시책 사업 및 각종 연구·시범학교 등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무원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직 관리 규정 개정 시 검토한다.
68	제27조4	④ 교육감은 공동조리교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이 공동조리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체육건강과	수용불가	
		제5장 단체교섭			제5장 단체교섭
69	제28조1	제28조【합의서작성】① 단체교섭에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교육감과 조합당사자가 서명 날인한다.	행정지원과	수용	
70	제28조2	② 교육감은 교섭 체결 후 1월 이내에 제1항의 문서를 소속 기관에 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② 교육감은 교섭 체결 후 1월 이내에 제1항의 문서를 소속 기관에 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순	조항	단체교섭 요구안	주관부서	협의결과	최종 합의안
71	제29조1	제29조【단체협약이행】①교육감은 단체협약이행 결과를 분기별로 조합에 통보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① 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 결과를 반기별로 조합에 통보한다.
72	제29조2	② 교육감은 협약 내용 중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 및 경제적·사회적 지원 상황을 위한 예산은 관계 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② 교육감은 협약 내용 중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 및 경제적·사회적 지원 상황을 위한 예산은 관계 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73	제30조1	제30조【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 관련 사항 사전 협의】① 교육감은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각급 학교 행정 실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 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교육정책과	수용	
74	제30조2	② 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행정 실무 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 실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교원의 업무가 행정 실무에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교육정책과	수정수용	② 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75	제30조3	③ 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③ 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76	제31조	제31조【보충 협약 기타】 교육감과 조합 쌍방은 이 협약의 유효 기간 중에 보충 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	수용	
		제6장 근로 조건			제6장 근로 조건
77	제32조	제32조【대체인력 지원】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하여야 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8	제33조1	제33조【행정 실무 환경 근무 여건 개선】 ① 교육감은 사무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한다.	기획조정관	수정수용	① 교육감은 환경 개선에 따른 예산 요구가 있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79	제33조2	② 도교육청은 행정 실무 이미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학교 자체 실정을 고려·설치하도록 한다.	행정지원과	수용	
80	제34조1	제34조【업무 대행】 ① 교육감은 운전원의 토요일과 후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등 그에 상응하는 대가(시간외수당)가 주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원이 연가 등 부재 중 경우를 대비한 업무 대행 문제 해결 방안(예비 기사 확보, 대체인력 인건비 현실화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재무정보과 행정지원과 총무과	수용 수용 수정수용	① 교육감은 운전원의 토요일과 후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등 그에 상응하는 대가(시간외수당)가 주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원이 연가 등 부재 중 경우를 대비한 업무 대행 문제 해결 방안(예비 기사 확보, 대체인력 인건비 확보 노력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81	제34조2	② 교육감은 조리사의 연가 등 부재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비를 학교 회계 예산에서 편성하도록 한다.	체육건강과	수용	
82	제35조1	제35조【당직 실무 환경 등】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당직 실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당직 실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83	제35조2	② 교육감은 당직 수당을 자치 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② 교육감은 당직 수당을 자치 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4	제35조3	③ 교육감은 당직을 할 경우 다음 날 반일 휴무가 아닌 종일 휴무가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③ 교육감은 당직을 할 경우 다음 날 반일 휴무가 아닌 종일 휴무가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순	조항	단체교섭 요구안	주관부서	협의결과	최종 합의안
85	제36조	제36조【공무원피복비】교육감은학교실정에따라아래직원에대하여교단지원에필요한피복비 가학교회계의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권장한다. 1. 방호원, 사무원(외근) 및 조무원 : 작업복 2. 조리사(원) : 위생복 3. 운전원 : 운전복	기획조정관	수용	
86	제37조1	제37조【협의회개최】①교육감은제5조제2항제3호정책협의회와관련하여분기별협의회를개 최하며,협의안건은개최10일전에통보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①교육감은제5조제2항제3호노사협의회와관련하여분기별로개최하며, 협의 안건은 개최 10일전에 통보한다.
87	제37조2	②안건협의를위해대표자를부교육감으로하고,관련업무부서에서참석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②노사협의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협의회 개최를 위해 대표자를 행정지원국장으 로 하고, 관련 업무부서에서 참석한다.
88	제38조1	제38조【근무환경개선】①교육감은직원의근무여건개선을위하여직원휴게실을설치하고,기존 교원휴게실을직원휴게실로활용토록한다.	교육시설과	수정수용	①교육감은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급적 직원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 고 기존 교원 휴게실을 직원 휴게실로 활용토록 한다.
89	제38조2	②교육감은각급학교및기관에근무하는지방공무원의동아리활동을권장하고,예산의범위내에 서지원할수있다.	기획조정관	수용	
90	제38조3	③교육감은모든급식실에냉온풍기를설치하여작업환경을개선한다.	체육건강과	수정수용	③교육감은 모든 급식실에 냉온풍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 작업 환경을 개 선한다.
91	제38조4	④교육감은조무원을위한최소한의편의시설인탈의실및샤워실을확충한다.	교육시설과	수정수용	④교육감은 교직원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92	제39조1	제39조【직원동원최소화】①교육감은교육청과관련이없는외부행사(시험감독등)에지방공무 원의동원을최소화하도록한다.	총무과	수용	
93	제39조2	②교육감은학기초연수및각종행사개최를최소화하며지방공무원의참석을강요하지않는다.	교육과정과	수용	
94	제40조	제40조【한마음체육대회개최】교육감은지방공무원의화합과단결을도모하고건전한직장분위 기조성을위한한마음체육대회를연1회이상개최하도록한다.	행정지원과	수용	
		제7장교육재정			제7장 교육재정
95	제41조	제41조【학교회계전출금편성비율조정】학교회계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교당경비비율을적정 수준으로높이는방안을강구한다.	기획조정관	수정수용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당 경비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96	제42조	제42조【예산집행의적정성】교육감은각급학교의학교회계에서학생교육과직접관련이없는분 야에예산집행이이루어지지않도록한다.	기획조정관	수용	
97	제43조	제43조【예산의합리적편성】예산의편성은계획적인편성을원칙으로하고즉흥적,일회성예산편 성을지양하도록한다.	기획조정관	수정수용	예산의 편성은 즉흥적이거나 일회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계획성있게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제8장공무원권리보장			제8장 공무원 권리보장
98	제44조	제44조【육아시간】교육감은「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규정된여성공무원 의육아시간이보장될수있도록한다.	총무과	수용	

순	조항	단체교섭 요구안	주관부서	협의결과	최종 합의안
99	제45조	제45조【남성공무원의육아휴직】교육감은자녀를양육하기위한남성공무원의육아휴직이보장될수있도록한다.	총무과	수용	
100	제46조	제46조【병설유치원겸임수당】교육감은초등학교에근무하는지방공무원이병설유치원업무를겸임하여처리할때는겸임수당을지급할수있는관련근거를마련한다.	행정지원과	조항 이동	제64조로조항이동 (당초소관부서를총무과에서행정지원과로이관)
101	제47조	제47조【민간경력인정】교육감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따른공무원임용전유사경력인정추진에있어서행정정보조,과학보조등의경력자가차별받지않도록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 인정 추진에 있어서 행정정보조, 과학보조 등의 경력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한다.
102	제48조	제48조【맞춤형복지비인상】교육감은지방공무원의맞춤형복지비가자치단체수준으로인상되도록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가 자치단체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되도록 노력한다.
103	제49조	제49조【휴무일근무개선】교육감은지방공무원이학교개교기념일,재량휴업일등에교원과동일하게휴무할수있도록한다.	총무과	수용불가	수용
		제9장행정제도개선			제9장 행정 제도 개선
104	제50조	제50조【교원인사및복무업무이관등】교육감은각급학교의교원인사,상훈,복무업무,인사기록카드정리업무등교원인사에관한사항은행정실에서담당하지않도록한다.	교원지원과	수용불가	
105	제51조1	제51조【행정실업무개선방안】①교육감은교원업무경감실시로지방공무원의업무가일방적으로증가되지않도록계획을수립하여시행한다.	학교지원과	수정수용	제51조【행정실업무개선방안】①교육감은교원업무경감실시로교원업무가지방공무원의업무로전가되지않도록노력한다.
106	제51조2	②교육감은보건,영양,정보,병설유치원본연의업무가행정실로부당하게이관되지않도록한다.	체육건강과 재무정보과 교육과정과	수용불가	체육건강과(급식:학교내업무분장은학교장권한이며,급식전담인력미배치학교의경우업무담당자(대행자)지정은불가피함,보건:교육감은상수도사용학교에정수기등이설치되지않도록지도해나간다) 교육과정과(학교내업무분장은학교장의권한임) 재무정보과(학교내업무분장은학교장의권한이며,전담인력의증원없이는해결이어려울것으로보임)
107	제51조3	③교육감은행정실업무범위를명확하게법제화하여학교별업무담당자지정의혼선을제거하고,학교행정업무전반에관한표준매뉴얼을제작하여효율적으로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한다.	학교지원과	수정수용	【제51조제3항을동조항및제61조제2항으로일부조항분리】 ③교육감은학교행정실업무전반에관한표준매뉴얼을제작하여효율적으로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한다.
108	제51조4	④교육감은새로운회계시스템도입등갈수록증가하는학교행정업무를감안하여지방공무원을증원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④교육감은 새로운 회계시스템 도입 등 갈수록 증가하는 학교행정업무를 감안하여 지방공무원이 증원되도록 노력한다.
109	제51조5	⑤교육감은학교행정실근무지방공무원의결원발생시책임감과전문성있는인력이즉시충원될수있도록지역교육청별로지방공무원인력풀(정원외관리)제도를운영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⑤교육감은 학교 행정실 근무 지방공무원의 결원 발생시 책임감과 전문성 있는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10	제51조6	⑥교육감은중·고병설학교의경우교무실과마찬가지로행정실도중·고별로분리설치하여맞춤형학교행정이될수있도록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⑥교육감은 중·고 병설학교의 경우 교무실과 마찬가지로 행정실도 중·고별로 분리 설치하여 맞춤형 학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11	제51조7	⑦교육감은지역교육청에학교급식점검,유해업소점검등에필요한보건직공무원을충원하고,학교행정실에물관리,우유급식등업무를담당하는전문인력을충원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⑦교육감은지역교육청에학교급식점검,유해업소점검등보건업무의증가에따른보건직공무원의충원노력을통해보건직공무원의근무여건을개선한다.
112	제51조8	⑧교육감은5급학교행정실장을제외한모든학교의행정실장은6급으로배치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⑧교육감은 5급 학교행정실장을 제외한 모든 학교의 행정실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순	조항	단체교섭 요구안	주관부서	협의결과	최종 합의안
113	제51조9	⑨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일반직과장급보직이 2개 이상 인지역은 선임과장직급을 4급으로 선임 담당직급을 5급으로 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⑨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일반직과장급보직이 2개 이상 인지역은 선임과장직급 및 선임 담당 직급을 상향조정하도록 노력한다.
114	제52조	제52조【방화관리자업무등】 교육감은 1인 행정실장 배치 학교에 대해서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 업자에게 방화 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재무정보과	수용	
115	제53조1	제53조【학교시설공사지원업무개선】 ① 교육감은 지역 교육청에 학교 시설 관리 및 공사 지원팀 또는 담당자를 신설(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급 학교의 시설 관리가 전문가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육시설과	수정수용	① 교육감은 지역 교육청에 학교 시설 공사 업무 지원을 위한 서포터즈제를 활성화하여 각급 학교의 시설 관리가 전문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116	제53조2	② 교육감은 지역 교육청에 시설직 공무원을 충원·배치하여 학교의 1,000만 원 이상 시설 공사를 전담하도록 노력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② 교육감은 학교의 2,000만 원 이상의 시설 공사 전담을 위하여 지역 교육청에 시설직 공무원의 연차적 충원·배치 노력을 함으로써 행정 실 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117	제54조	제54조【학교시설물관리】 교육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시설과	수정수용	교육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118	제55조1	제55조【감사방법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지도 점검 등을 가급적이면 학년 초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감사관	수용불가	
119	제55조2	② 교육감은 교직원 간 마찰을 막기 위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학교 자체 감사를 폐지하고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감사관	수용불가	
120	제55조3	③ 교육감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된 학교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정기 종합 감사를 면제한다.	감사관	수정수용	③ 교육감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학교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정기 종합 감사를 면제한다.
121	제55조4	④ 교육감은 감사 기구 및 인력을 지역 교육청에도 확보하여 지역 교육청에서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감사관	수용불가	
122	제56조1	제56조【학교 운영위원회제도 개선】 ① 교육감은 학교 운영위원회 간사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노력한다.	학교지원과	수용불가	
123	제56조2	② 교육감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복잡한 업무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교지원과	수용	
124	제57조1	제57조【승진제도 개선 등】 ① 교육감은 사무관 승진을 위한 심사 방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① 교육감은 사무관 승진을 위한 심사 방법을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예고(공개)한다.
125	제57조2	② 교육감은 승진 후보자 명부를 공개한다.	총무과	조항 삭제	제18조 제2항과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
126	제57조3	③ 교육감은 승진 등을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② 교육감은 승진 등을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퇴직예정자 현황 등)를 공개 한다.
127	제58조1	제58조【조리종사원 인력 배치 기준 변경 등】 ① 교육감은 원활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조리종사원 배치 기준에 조리사(학교회계직 조리사 포함)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위생 점검 시 현실에 맞는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체육건강과	수정수용	① 교육감은 원활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조리종사원 배치 기준을 적정히 운영하고, 위생 점검 시 현실에 맞는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순	조항	단체교섭 요구안	주관부서	협의결과	최종 합의안
128	제58조2	②학교급식소현대화사업을현실에맞게시행한다.	체육건강과	수정수용	②학교 급식소 현대화 사업을 학교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장교육부등관련기관개선요구사항			제10장 교육부 등 관련기관 개선 요구 사항
129	제59조	제59조【호봉상한제폐지】교육감은일반직공무원의불합리한호봉상한제가폐지될수있도록노력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의 불합리한 호봉상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한다.
130	제60조1	제60조【성과상여금지급개선】①교육감은성과상여금지급에있어공무원들의의견이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한다.	총무과	수정수용	①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31	제60조2	②교육감은성과상여금지급에있어근무일수제외기간에출산휴가기간이포함되지않도록하고, 휴직자에게성과상여금을지급할시산정된등급전액을지급한다.	총무과	(부분) 수정수용	②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근무일수 제외기간에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지 않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한다.
132	제61조1	제61조【초·중등교육법개정】①교육감은초·중등교육법제31조제2항‘국·공립학교에두는학교운영위원회는당해학교의교원대표·학부모대표및지역사회인사로구성한다’를‘국·공립학교에두는학교운영위원회는당해학교의교직원대표·학부모대표및지역사회인사로구성한다.’로개정되도록건의한다.	학교지원과	수용	
133	제61조2	[조항신설]제51조제3항의일부조항이동신설 ②교육감은행정실업무범위를명확하게법제화하여학교별업무담당자지정의혼선을제거하고.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②교육감은 행정실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법제화되도록 노력한다.
134	제62조1	제62조【도의회서류제출】①교육감은도의원이서류제출요구시에는지방자치법제40조에규정된법적요건을갖추도록도의회에요구한다.	기획조정관	수용	
135	제62조2	②교육감은제1항의법적요건을갖추지아니한도의원의서류제출요구시적법한절차를통해재요구하도록요청한다.	기획조정관	수용	
136	제63조	제63조【도의회행정사무감사】교육감은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의규정에따라교육·학예에대한행정사무감사만실시하고본회의의결이있는경우에는특정사안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가실시될수있도록한다.	감사관	수용불가	
137	제64조	【당초제46조⇒제64조로조문이동】 제46조【병설유치원겸임수당】교육감은초등학교에근무하는지방공무원이병설유치원업무를겸임하여처리할때는겸임수당을지급할수있는관련근거를마련한다.	행정지원과	수정수용	【제46조에서제64조로조문을이동,총무과에서행정지원과로재분류】 제64조【병설유치원전담인력확충】 교육감은초등학교에근무하는지방공무원이병설유치원업무를겸임하지않도록전담인력확충을위해상부기관에건의한다.
		부칙			부 칙
138	부칙1조1	제1조(유효기간)①본협약의유효기간은협약체결일로부터2년으로한다.	행정지원과	수용	
139	부칙1조2	②본협약의유효기간이만료되더라도갱신체결시까지본협약의효력은지속된다.	행정지원과	수용	
140	부칙2조	제2조(이행방법)교육감은단체협약미이행기관에대하여조합에서이행요구가있을경우이를확인·지도하고,특별한사유없이 이를계속하여이행하지않을경우행정지도한다.	행정지원과	수용	
141	부칙3조	제3조(협약의보관)본단체협약을증거하기위하여협약서3부를작성하며교육감과조합이각각1부씩보관하고행정관청에1부를신고한다.	행정지원과	수용	
142	부칙4조	제4조(관계법령의준용)이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	행정지원과	수용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 서 대변 하겠습니다 !

III. 2014년 전반기 주요 사업 추진 일정

주 요 사 업 명	3월	4월	5월	6월	7월	비 고
단체협약 체결						
경북교육상 조례 개정						제2차 도의회 임시회(3.20)
행안부 주관 공무원 노사 공동연수						3.24.~25.
제4기 출범 1주년 기념행사 및 제2차 교육행정 발전 토론회						
제52차 상임위원회						
노사합동 워크숍						
제27차 임시대의원대회						
조합원 및 가족 단합 등반 대회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추진						장기 재직 휴가 등
제53차 상임위원회						
조합원 자녀 SKY대 및 기업체 견학						

※ 상기 사업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memo

memo

memo

참석자 명단

연번	지부명	직 책	성 명	연번	지부명	직 책	성 명
1	본조	위 원 장	김종기	27	영주	사무국장	전희진
2	본조	수석부위원장	박홍기	28	영천	지 부 장	이병동
3	본조	부위원장	김태균	29	상주	지 부 장	이연희
4	본조	부위원장	박재훈	30	상주	부지부장	임범수
5	본조	부위원장	장용복	31	문경	지 부 장	김석제
6	본조	부위원장	전미경	32	문경	사무국장	손봉원
7	본조	사무총장	정원상	33	경산	지 부 장	이명구
8	본조	정책교섭국장	서종철	34	경산	사무국장	박달원
9	본조	조직관리국장	신영찬	35	군위	지 부 장	성수용
10	본조	총무재정국장	이제복	36	군위	사무국장	김용수
11	본조	교육홍보국장	최정연	37	의성	지 부 장	정광덕
12	본조	기획조정국장	최대철	38	의성	사무국장	노현석
13	본조	회계감사위원	김진수	39	청송	지 부 장	김만일
14	본조	회계감사위원	김명철	40	청송	사무국장	김영효
15	본조	사무실장	박나연	41	영덕	지 부 장	김중섭
16	포항	지 부 장	이영욱	42	영덕	사무국장	최보규
17	포항	사무국장	변상진	43	청도	부지부장	문종길
18	경주	지 부 장	전삼용	44	청도	사무국장	이우민
19	경주	사무국장	설성환	45	고령	지 부 장	이준재
20	김천	지 부 장	김정래	46	고령	사무국장	김종진
21	김천	사무국장	이대원	47	칠곡	지 부 장	최연성
22	안동	지 부 장	조원정	48	예천	지부장	권기일
23	안동	사무국장	하영신	49	예천	사무국장	최재원
24	구미	지 부 장	전종필	50	봉화	지 부 장	김형한
25	구미	사무국장	최윤곤	51	봉화	사무국장	오재영
26	영주	지 부 장	권병동	52	울진	지 부 장	남성춘

숙소 배정

연번	성명	방호실	연번	성명	방호실
1	전미경	501	24	전종필	522
2	최정연		25	최윤곤	
3	박나연		26	이병동	
4	김종기	502	27	김석제	523
5	박홍기		28	이명구	
6	정원상		29	박달원	
7	김태균	503	30	성수용	601
8	박재훈		31	김용수	
9	장용복		32	정광덕	
10	최대철	504	33	노현석	602
11	신영찬		34	김영효	
12	이제복		35	문종길	
13	서종철	516	36	이준재	603
14	김진수		37	김종진	
15	이영욱		38	최연성	
16	변상진	520	39	권기일	607
17	전삼용		40	최재원	
18	설성환		41	조원정	
19	김정래	521	42	김형한	610
20	이대원		43	오재영	
21	김명철		44	남성춘	
22	이연희	509			
23	임범수				

임을 위한 행진곡

백기완 시. 김종률 곡.

사 랑 도 명 예 도 이 름 도 남 김 없 이
5 한 평 생 나 가 자 던 뜨 거 운 맹 세
9 동 지 는 간 데 없 고 깃 발 만 나 부 껴
13 새 날 이 올 때 까 지 혼 들 리 치 말 자
17 새 월 은 흘 려 가 도 산 천 은 안 다
21 깨 어 나 서 외 치 는 뜨 거 운 합 성
25 앞 서 서 나 가 니 산 자 여 따 르 라
29 앞 서 서 나 가 니 산 자 여 따 르 라